성주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5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2002년11월부터 전자입찰 실시로 행정비용 징수명분이 미약하며, 상급기관의 폐지 권고와 건설협회의 진정 및 건의로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비용의 부담을 해소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별표 1의 9호 8목 입찰참가 등록 란 수수료 건당 10,000원을 삭제.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다. 입법예고(2005. 5. 6 - 2005. 5. 26) 결과 : 의견 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제9호 **8목 입찰참가등록란**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